

2026년 음성군 청년창업 지원 사업계획(안)

음성군 청년창업 활성화 및 청년들의 성공 창업을 지원하고 지역 정착 유도를 위한 청년 창업지원금지원 사업계획임

I 사업개요

- 사업명 : 2026년 음성군 청년창업 지원사업
- 사업기간 : 2026. 1. ~ 12.
- 사업목표 : 10명
- 사업비 : 203,000천원(군비)
- 지원대상 : 음성군 거주자 및 거주 예정인 19세 이상 ~ 39세 이하 청년 예비 창업자 또는 초기 창업자 *지원 자격은 세부 요건 참조

구분	세부요건
공통	- 음성군 거주자 및 거주 예정인 19세 이상 ~ 39세 이하 청년 -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음성군인 자 및 음성군 거주 예정인 자 * 거주 예정자는 대상자 선정 시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음성군 전입 必
예비 창업자	-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없는 자 * 창업 예정지를 음성군 등록 必
초기 창업자	- 사업 공고일 기준 창업 후 만 5년 이내인 자(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 기준) -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장 주소지가 음성군인 자 * 사업자등록이 2개 이상인 경우 사업개시일 기준 가장 오래된 사업자등록으로 판단 * 공동사업자의 경우 1명이라도 청년 범위에 속하면 지원 가능

- 지원제외 대상
 - 고용보험 가입자(신청일 기준)
 - 지원제외업종[별첨1] 사업자 또는 창업예정자
 -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
 - 최근 3년 이내 정부 등에서 창업자금을 지원받은 자
 - 2023, 2024, 2025 음성군 청년센터 창업지원금을 지원받은 자
 -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기재한 자
 - 비영리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,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으로 창업하려는 자
 - 기타 군수와 음성군 청년 정책위원회에서 지원 제외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

○ 사업 참여 조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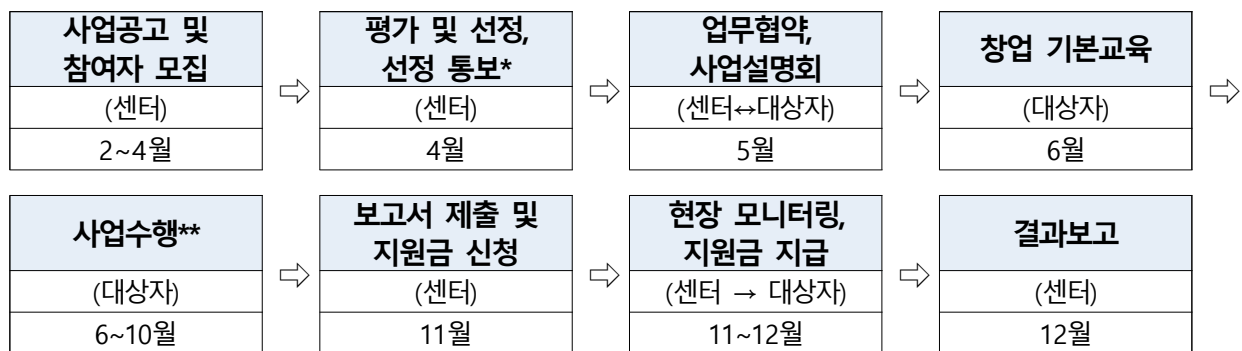
- 창업 예정(소재)지는 음성군 必(행정구역 주소지 기준)
- 사업자등록 및 개업은 사업 정산 前까지 완료하여야 함

○ 사업 분야 : 전 분야 가능(단, 지원제외업종[별첨1]은 참여 불가)

○ 사업 내용

- 창업 기본교육 8h 제공
- 1인당 2천만원 한도(공급가액) / 자부담 50% 필수(지원금 1:1 매칭)
- 지원 분야 : 인증평가, 매장 모델링, 브랜드 개발, 마케팅 홍보, 간판, 시설·설비, 인건비, 사업장 임차료 등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에 직접 연관이 있는 직접 사업비 지급

○ 사업 지원절차



* 타지역 거주자는 음성군 전입 확인을 위해 선정일 기준 30일 직후 주민등록초본 제출

** 선정 후 사업수행 기간동안 집행률 저조시 협약 해지 검토(2030전략실 협의)

※ 세부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II 세부 추진계획

□ 사업 공고 및 참여자 모집

○ 규 모 : 10명

○ 요 건 : 음성군 거주자 및 거주 예정인 19세 이상 ~ 39세 이하 청년 예비 창업자 또는 초기 창업자

○ 모집 일정

1. 접수 기간 : 2026. 2. ~ 4. ※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
2. 홍보 방법 : 온라인(홈페이지, SNS 등), 오프라인(현수막, 리플릿 등)
3. 접수 방법 : 음성군 청년센터 청년대로* 오프라인 접수

*음성군 금왕읍 무극로 237, 403호 / 우편(대리)접수 불가

○ 제출 서류

번호	제출 서류	유의 사항	발급처
공통	1 사업신청서	◦ 별도 서식	
	2 사업계획서		
	3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		
	4 주민등록등본	◦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必	정부24
	5 사실증명 (총사업자등록내역)	◦ 홈택스-민원증명-사실증명(총사업자등록내역)	홈택스
	6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	◦ 정부24-‘자주찾는검색’-‘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’검색	정부24
	7 국세 납세증명서		홈택스
	8 지방세 납세증명서		정부24
해당시	9 사업자등록증	◦ 초기 창업자에 限	
	10 창업 관련 분야 자격증	◦ 유효기간 내 자격증	해당 발행처

※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으로 서명 또는 날인 필수

- 구비서류 누락 또는 서명 누락 시 접수 불가

□ 지원 대상자 평가 및 선정

○ 평가 방법

- 1차 서류심사, 2차 면접심사(발표 및 질의응답)

구분	심사 방법	심사 일정	심사 내용
1차	서류심사	4.27.~5.1.	◦ 서류 및 자격 적격여부 심사 - 신청인 자격요건, 필수서류 제출 여부 등 ※ 서류합격 통보 : 5.2限 개별통보
2차	면접심사 (발표 및 질의응답)	5.11~5.15.	◦ 창업자 역량 및 의지 ◦ 사업 아이템 적절성 ◦ 성장 가능성 등 ※ PPT 또는 한글파일 제출(5분 이내) -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5.10.까지 메일 제출

※ 세부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○ 선정 절차

- 평가점수 및 가점 합산하여 면접심사 70점 이상 고득점순으로 10명 선정
- 중도 포기, 선정취소 발생 등을 대비하여 예비자 선정(5명 내외)
동점자 발생 시 ① 배점 항목이 높은 신청자 ② 가점 점수가 높은 신청자 ③ 연장자순으로 선정

○ 선정 통보 방법 : 선정자 대상 문자 및 이메일 통보

□ 사업비 구성 및 지원 내용

<음성군 청년 창업지원금 총사업비 구성 >

사업화 지원금	자기부담금	
	현금	현물
총사업비의 50%(2,000만원) 이하	총사업비의 25%(1,000만원) 이상	총사업비의 25%(1,000만원) 이하

<지원금 인정 예시 >

소요금액	사업화 지원금	자기부담금	지원여부
4,000만원	현금 2,000만원	현금 1,000만원	○
		현물 1,000만원	
4,000만원	현금 2,000만원	현금 1500만원	○
		현물 500만원	
4,000만원	현금 2,000만원	현금 700만원	X (현물 50% 초과)
		현물 1,300만원	

※ **현물성은 자기부담금(2,000만원) 내에서 50%이하만 인정됨**

- **자산취득의 성격이 높은 시설설비, 인건비, 임차료 부분을 현물성 자산으로 구분**
(자산구분 관련 세부내용 Ⅲ. 지원분야 및 지원금 지급 참조)

○ 사업비는 사업화 지원금과 자기부담금으로 구분되며, 협약 기간 내
지불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원 가능

○ 지원 내용

- 2개 이상 분야 신청 가능
- 공급가액 기준 1인당 최대 2,000만원 지원(후 정산)
- 현물은 자기부담금으로 최대 1,000만원까지 인정됨
- 자부담 50% 필수(사업화 지원금과 자기부담금 1:1 매칭)
- 협약체결일 이전에 진행한 과제에 대해서는 지원금 지급 불가

※ 협약체결 이후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만 지원금 인정

- 제출 기한 내 지원금 증빙서류 및 완료 보고서 제출 必

※ 미제출 시 지원금 지급 불가 및 선정취소 처리

○ 지원 불가 항목

- 특수관계자* 간 거래 *특수관계자 범위[별첨2]
- 공과금, 보험료, 렌탈료, 기부금, 대출이자, 각종 세금(부가세 등)
- 간이영수증, 허위 영수증 등을 제출하는 경우

- 지원 항목 중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비용
- 일회성 경비와 상품 제조에 드는 재료비
- 기타 청년창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비용
- 위탁 외부 업체(거래처)와 계약 파기 시 발생하는 위약금 및 손실액
- 사업장 계약 시 지급하는 계약금 및 보증금
- 협약체결일 이전에 집행한 비용

□ 사업설명회 및 창업 기본교육

○ 사업설명회 및 창업 기본교육

1. 일정 : 지원 대상자 선정 통보 시 일정 안내*
*자세한 일정은 지원 대상자에게 개별 통보 예정
2. 장소 : 음성군 청년센터 청년대로(음성군 금왕읍 무극로 237, 403호)

○ 창업 기본교육 커리큘럼(안)

강의 주제	세부 내용	교육 시간
아이템 타당성 검토	- 사업 아이템 타당성 검토 방법 - 타당성 검토 실무	2H
시장환경 분석	- 시장환경 변화 - 시장환경 분석 방법	2H
우수사례 분석	- 우수 소상공인 소개 - 실패·성공 요인 분석	2H
마케팅 교육	- 타겟 고객층 선정 및 홍보 - 고객층 범위 확대 방법	2H
합계		8시간

※강의 주제 및 교육 시간은 변경될 수 있음

- ※ 사업설명회 및 교육은 반드시 대상자 본인만 수강(참석)할 수 있으며, 그 외 가족이나 종업원 등 타인의 대리 수강(참석) 불가. 대리 수강(참석) 적발 시 불인정 처리함

III

지원분야 및 지원금 지급

□ 지원분야

자산 구분	분야	세부 지원 및 불가 항목	사업화 지원금	자 기 부담금
현금	인 증 평 가	지식재산권, 인증취득(HACCP 등), 제품의 시험성적 의뢰 비용, 기술평가 수수료, 인증서 발급 수수료 등	○	○
	불 가	-협약 기간 이전에 출원한 지식재산권 및 기등록 지식재산권 갱신 비용 등 -지식재산권 성공 보수비용 등		
	매 장 모 델 링	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상의 사업장 인테리어 등 내·외부 리모델링 소요 비용		
	불 가	-PC, 태블릿 TV, 에어컨, 가스레인지, 소파, 마용 의자, 가구류 등 자산성 물품 (자기부담금으로 인정)		
	브랜 드 개 발	(브랜드) BI 및 CI 개발, 브랜드 네이밍, 캐릭터 개발 (디자인 패키징) 제품 및 상품 디자인 및 포장 디자인		
	불 가	-포장지, 상자 등 단순 제작 비용(디자인 제작에 필요한 비용만 지원)		
	마케 팅 홍 보	(광고) 온·오프라인 광고에 드는 비용 (행사)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, 이벤트 비용 (홍보물) 홍보영상, 광고 전단, 카탈로그, 브로슈어 등 홍보물 제작 비용 (홈페이지 제작) 홍보·판매 목적의 홈페이지		
현물	불 가	-사업체 및 아이템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물품 (BI·CI·로고 등을 인지할 수 없는 물품) -박람회 등 행사 참여 시 숙박료, 항공료, 교통비 등 부대비용은 사업화 지원금 항목지출 불가 (자부담 항목으로만 지출 가능)	X	○
	간 판	플렉스간판, LED(채널)간판, 네온간판, 돌출간판, 지주간판, 입간판 등		
	불 가	-옥외광고사업자 미등록 업체를 이용할 경우 -건축법 위반(무허가 건물)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한 업소		
	시 설 비	(시설·설비) 기성품 또는 제작할 수 있는 시설·설비에 대한 구입비 (장비 구매) 기성품 또는 제작할 수 있는 장비에 대한 구입비		
	불 가	-단순 이동 수단(화물·배달·인원 수송 등) 에 필요한 장비(예: 차량구매 불가) -중고 물품 구입비용 -설치비, 관세 및 배송비(택배·용달차 등) 등 부대비용 지원 불가 -지원 대상자의 창업 아이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(목적 외 사용) 시설·설비·장비 구입비용		
	인건비	대표 및 직원(신규 채용/기고용) 인건비		
	불 가	-1인 1개월 215만원*을 초과하는 금액 *약 215만원 = 최저임금 10,320원(1H)×월 209시간(주 40H+주당 유급 주휴 8H) -(직원 인건비) 4대 보험 납부 증빙서류가 없는 직원의 인건비 -(직원 인건비) 직계존비속, 아르바이트, 파견직원 고용 등		
	사업장 임차료	사업자등록증 소재지 상의 사업장 확보에 대한 비용		
	불 가	-계약금, 보증금, 권리금 및 관리비 -건물 등 원상 복구 비용 -본인 소유의 건물 임차료와 관리 비용		

※ 간판 지원 불가 항목 중 '옥외광고물 표시 허가 미이행' 삭제(옥외광고사업자 등록증 제출로 대체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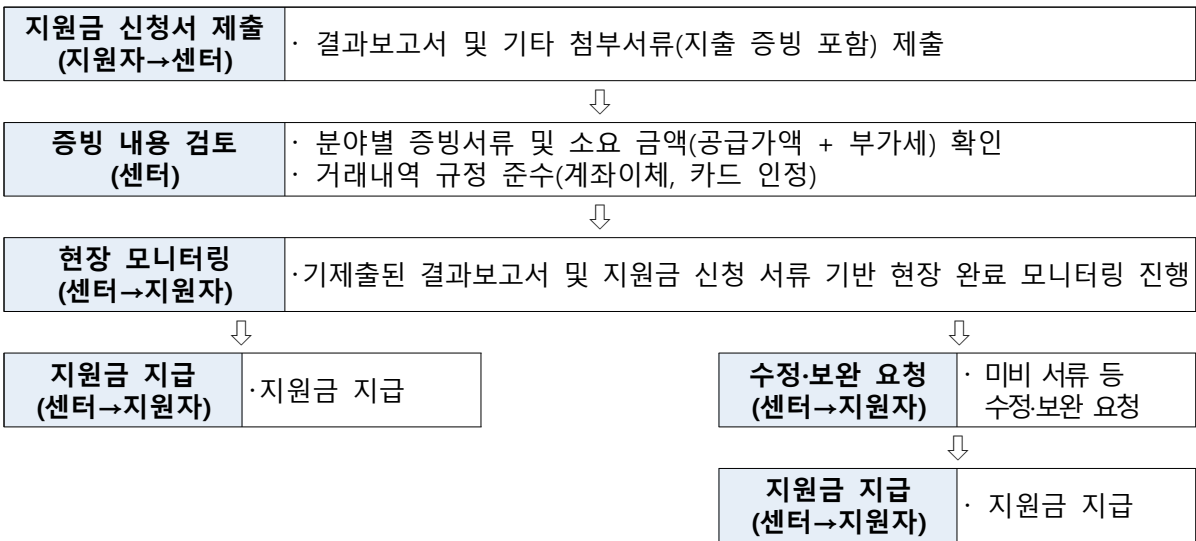
※ 2026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기준 변경

□ 현장 모니터링 및 지원금 지급

○ 현장 모니터링

- 지원 대상자는 사업화 완료 후 센터가 정한 기한 내에 완료 보고서와 지출 증빙서류 및 사업자등록증 제출 必
- 당초 사업계획 및 지출 증빙에 대한 현장 및 사업화 진행 상황 확인

○ 지원금 지급 절차



□ 사후관리 및 만족도 조사

- 만족도 조사 및 의견수렴을 통해 차년도 사업에 반영
- 결과 보고 및 정산보고서 제출(제출처: 음성군 2030전략실)

IV 소요 예산

(단위 : 천원)

세부항목	소요예산	산출내역	비고
총사업비	203,000		
사업화 지원금	200,000	○ 사업화지원금(20,000천원×10개소) : 200,000	
교육비	960	○ 강사비(480천원×2명) : 960	
운영비	2,040	○ 평가위원 수당 : 750	
		- 면접(250천원×3명) = 750천원	
		○ 업무추진비 : 200	
		○ 기타운영비(다과, 현수막 제작 등) : 1,090	

끝.

[별첨1]

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

표준산업분류	업종
33409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
46102 중	담배 중개업
46107 중	예술품,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
46209 중	잎담배 도매업
46333	담배 도매업 * 담배대용물(전자담배 등) 포함
46416, 46417 중	모피제품 도매업/ * 단,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
46463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
4764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
47811 중	약국, 한약국
47859 중	성인용품 판매점
47911, 47912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,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
47993 중	다단계 방문판매
52991 중	통관업(관세사, 관세법인, 통관취급법인등)
56211	일반유흥주점업
56212	무도유흥주점업
58122 중	경마, 경륜,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
58211, 58212, 58219 중	도박 및 사행성, 불건전 게임 S/W 개발 및 공급업
63999 중	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
64	금융업
65	보험 및 연금업
66	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
68	부동산업 * 부동산의 임대, 구매,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,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·분양, 임대 활동이 포함 * '착한 임대인'에 한해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(68112) 신청 가능 * 단, 부동산관리업(6821),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(68221)은 신청가능 -부동산관리업: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

표준산업분류	업종
	관리하는 산업활동(주거용·비주거용 부동산관리) -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: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,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
76390 중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711, 712	법무,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
731	수의업
73904 중	감정평가업
75330	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(예: 탐정업, 흥신소 등)
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75999 중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86	보건업 * 단, 보건업(86) 중 유사의료업(86902)은 신청가능 * 안마원(96122)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(통계청 기준)
91113	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
91121	골프장 운영업
9122 중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91221 중	성인용 게임장 운영업
91241 중	복권 판매업
91249	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
91291	무도장 운영업 (예: 댄스홀, 콜라텍 등)
9612 중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*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-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-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
96992	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(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)
96999 중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기타	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, 향락 등 불건전 업종, 기타 국민 보건,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,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

[별첨2]

특수관계자의 범위(주관기관)

○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
1. 친족관계(민법 제777조 친족의 범위준용)

- 8촌 이내의 혈족
- 4촌 이내의 인척
- 배우자

2. 경제적 연관관계

- 주관기관 또는 주관기관 임직원의 금전 기타 재산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자
- 주관기관 또는 주관기관 임직원과 생계를 함께하는 자

3. 그 외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

- 자신, 자신의 직계 존속·비속,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·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
-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관·단체
- 배우자, 자신의 직계 존속·비속과 형제자매,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가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·단체
- 자신과 100만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 관계가 있는 자
- 퇴직 임직원으로서 퇴직 전 5년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
- 학연, 지연, 종교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
- 최근 2년 이내에 인·허가, 계약의 체결, 정책·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자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
- 그 밖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는 자